

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심사보고서

2006. 11. 1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청 원 인 : 조 기 태 (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61-2)외 1,440명
- 나. 소개의원 : 안재홍 의원(재무건설위원회 위원)
- 다. 접수일자 : 2006년 10월 24일
- 라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25일
- 마. 상정일자 : 제16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6. 11. 1) 상정·의결

2. 請願의 要旨

-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종로구 관내 초·중등학교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식품비를 지원하여, 학교급식의 질 개선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요청

3. 請願紹介議員 要旨

- 지난 6월 발생한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대란으로 모두 3,71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허술한 감독관청 등 관계당국과 이윤추구가 지상목표인 대기업에 먹거리 생산 유통을 맡겨버린 급식행정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므로, 현 시점에서 관내 학교급식에 예산지원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

4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5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6. 討 論 要 旨

○ 이종환 위원의 심사보류안 동의

7. 審査保留案의 要 旨

○ 국내 농·수·축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, 열악한 종로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함.

8. 審 査 結 果 : 심사보류

(조기태 외 1,440명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로 가결함)